



제427회국회(임시회)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모집·채용과정에서 요구하지 말아야 하는 사항 명시 〉
■ 백승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6130호)

2025. 7.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전문위원 한석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모집·채용 과정에서 요구하지 말아야 하는 사항 명시	2

I. 제안경위

2024년 12월 2일 백승아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2024년 12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용에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기 위하여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특히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등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아직도 직무와 무관한 서류심사 및 면접 과정에서 민감한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기재하도록 하거나 질문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최근 고용노동부 실태점검 결과,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채용 과정에서 부모 직업이나 결혼 여부 등의 구직자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요구한 것으로 드러남.

이에 사업주가 모집·채용 과정에서 요구하지 말아야 하는 사항들을 현행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이로 인한 차별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

Ⅲ. 검토의견

1. 모집·채용 과정에서 요구하지 말아야 하는 사항 명시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 근로자에게 제시하거나 요구하지 않아야 할 사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7조 제2항).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조(모집과 채용) ① (생략)	제7조(모집과 채용) ① (현행과 같음)
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u>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조건</u> 을 제시하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 ----- ----- <u>다음 각 호의</u> ----- ----- ----- ----- -----.
<신설>	1. <u>구직자 본인의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u>
<신설>	2. <u>구직자 본인의 혼인여부, 임신, 출산 등에 관한 조건</u>

<u><신 설></u>	<u>3.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 · 재산 등에 관한 조건</u>
<u><신 설></u>	<u>4. 구직자 본인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 · 직업 · 재산 등에 관한 조건</u>
<u><신 설></u>	<u>5.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조건</u>

2. 검토의견

현행법은 사업주에 대해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않는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¹⁾

그런데 아직도 서류심사 및 면접 과정에서 직무와 무관한 민감한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기재하도록 하거나 질문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현행법에 사업주가 근로자의 채용과정에서 제시하거나 요구하지 않아야 할 사항들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근로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모집·채용 과정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함

1) 제7조(모집과 채용) ①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으로써, 근로자의 모집·채용과정의 공정화를 도모하려는 취지임.

다만, 구직자의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²⁾은 구인자가 채용과정에서 구직자에게 요구하거나 수집해서는 안되는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의 종류를 명시하고 있고(제4조의3), 이를 위반할 경우 구직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제17조제2항제3호), 본 개정안의 취지는 일부 달성된 것으로 보임.

고용노동부는 사업주가 모집·채용 과정에서 혼인 여부, 부모 직업 등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에서 개정안과 유사한 내용을 기초심사자료로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처분(채용절차법 제17조제2항제3호)을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법 개정의 실익이 크지 않다는 입장임.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구인자는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구직자 본인의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2.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혼인여부·재산
3.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

제17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제4조의3을 위반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개인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한 구인자

문 의 처
02)6788-5539